

의안번호	제호
회 연월일	2024. . . (제회)

의결사항

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부서	국무위원 이상민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현행 경찰청장이 시·도 경찰청장 등에게 부여한 시험실시권을 채용 계급과 규모별로 재편하여 부속기관 등으로 위임·위탁하려는 것임

2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

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의 제목“(시험실시권의 위임)”을“(시험실시권의 위임·위탁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시·도경찰청장이나 경찰대학의 장”을 “경찰대학의 장이나 중앙경찰학교의 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제1호 및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제3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경위 이상 채용시험(법 제10조제3항제8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은 제외한다)의 실시권: 경찰대학의 장
2. 경사 이하 채용시험의 실시권: 중앙경찰학교의 장
 - ② 중앙경찰학교의 장은 제32조 단서에 따라 제1항제2호의 채용시험을 실시할 경우에는 채용시험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시·도경찰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.
 - ③ 경찰청장 또는 제1항·제2항에 따라 시험실시권의 위임·위탁을 받은 사람(이하 “시험실시권자”라 한다)은 시험을 원활하게 실시하기

위하여 해당 시험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시험장의 준비, 시험관리관의 파견 등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34조제1항 본문 중 “경찰청장 또는 제33조에 따라 시험실시권의 위임을 받은 사람(이하 “시험실시권자”라 한다)”을 “경찰대학의 장 또는 중앙경찰학교의 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3조(시험실시권의 위임) 경찰청장은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권한을 <u>시·도경찰청장이나 경찰대학의 장</u> 에게 위임한다. 다만, 경찰청장은 시험출제 수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출제 업무를 직접 할 수 있다.	제33조(시험실시권의 위임·위탁) ① ----- ----- --- <u>경찰대학의 장이나 중앙경찰학교의 장</u> -----, 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<u>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실시권: 시·도경찰청장</u>	1. <u>경위 이상 채용시험(법 제10조제3항제8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제외한다)의 실시권: 경찰대학의 장</u>
2. <u>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실시권(긴급하게 인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거나 업무내용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): 시·도경찰청장</u>	2. <u>경사 이하 채용시험의 실시권: 중앙경찰학교의 장</u>
3. <u>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의 실시권: 경찰대학의 장</u>	<삭 제>

<신 설>

<신 설>

제34조(공개경쟁채용시험의 공고)

① 경찰청장 또는 제33조에 따라 시험실시권의 위임을 받은 사람(이하 “시험실시권자”라 한다)은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임용예정계급, 응시자격, 선발예정인원, 시험의 방법·시기·장소, 시험과목 및 배점에 관한 사항을 시험실시 2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시험 일정 등 미리 공고할

② 중앙경찰학교의 장은 제32조 단서에 따라 제1항제2호의 채용시험을 실시할 경우에는 채용시험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시·도경찰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③ 경찰청장 또는 제1항·제2항에 따라 시험실시권의 위임·위탁을 받은 사람(이하 “시험실시권자”라 한다)은 시험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시험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시험장의 준비, 시험관리관의 파견 등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34조(공개경쟁채용시험의 공고)

① 경찰대학의 장 또는 중앙경찰학교의 장-----

-----.

필요가 있는 사항은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. ② ~ ④ (생 략)	----- -----. ② ~ ④ (현행과 같음)
--	---